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결정 고지한 소외 김□□에 대한 종합소 득세 20○○. ○. 수시분 금 30,000,300원 가산금 5,000,00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소외 이□□과 그 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106㎡(32평)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 건평 30㎡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만원, 임대기간 19○○. ○. ○.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 차계약을 맺고 동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였습니다.

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동 이□□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조로 금1,000만원을 이자 월 2푼,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습니다.

2. 동 이□□은 19○○. ○.5월 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부터의 이자를 첫 체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변제기한을 넘기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뿐 라 임대보증금의 반화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

원고와 동 이□□은 절충 끝에 19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이□□ 소유인 위 대지 및 건물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. 동 이□□은 위 채무이행을 미루기만 하기에원고는 가등기담보를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미루어 오다가 19○○. ○.에 이르러 하는 수 없이 동 이□□와 그 동안의 차용원리금 24,635,000원및 임대보증금 800만원 합계금 32,635,000원의 대물변제로 위 대지 건물에 대한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후 본 등기를 마쳤습니다.

3. 그런데 피고는 소외 납기 19〇〇. ○.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30,000,300원 가산금 5,000,000원, 합계금 35,000,300원을 체납하였다하여 19〇〇. ○. 의 대지·건물에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를 하였습니다.

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 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(물적 납세의무)의 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그러므로 위 국세납기의 1년전에 위 대지 가옥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가된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명백합니다.

4. 원고는 위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20〇〇. 〇. 〇.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 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〇〇. 〇. 〇.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20〇〇. ○. ○.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.

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위 지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

차용증

1. 갑 제3호증

대불변제합의서

1. 갑 제4호증 1, 2

심사청구서,결정서

1. 갑 제5호증

감정서

1. 갑 제6호증

등기부등본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